



교육감 규정

번호: A-670

제목: 학교 견학

항목: 학생

발행: 2022 년 9 월 22 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18 년 9 월 21 일자 교육감 규정 A-670 를 대체한다.

변경 내용:

- “법률 서비스 담당실”을 “시니어 현장 자문” (섹션 I.E) 또는 “법률 자문실”로 갱신(섹션 II.C.1 및 V).
- “현장 지원 센터의 운영 지원 담당 현장 지원 센터 매니저(운영 매니저)”를 “수퍼인텐던트 팀”으로 갱신(섹션 I.F. 및 VII).
- 견학 계획에는 반드시 학생의 의료적 요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견학 계획 요건을 명료하게 변경(섹션 II.A).
-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및/또는 섹션 504 계획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타당한 편의(들) 제공과 관련된 섹션 II.A.3 추가.
- 교통편과 관련된 섹션 II.A.7 을 갱신하고 일관된 언어 항목을 섹션 III.B.로 추가,
- 번역 관련 각주 내용을 갱신하고 섹션 II.C.2 으로 옮김.
- 섹션 II.D.10 은 학부모가 견학에 동반하는 학생의 형제자매들이 해당 학급(들)에 속하지 않을 때 조치를 명확히 함.
- 각 학교들이 학생 통학 담당실에 견학용 버스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갱신(섹션 III.A.4.b).
- 본 규정의 4 개 첨부 문건을 별도의 웹페이지로 이동.
- 그 밖의 본 규정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항목을 갱신 및 재구성함.



교육감 규정

번호: A-670

제목: 학교 견학

항목: 학생

발행: 2022년 9월 22일

요약

본 규정은 학교 견학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한다. 학교 견학이란 목적지나 교통편에 관계없이 학교 교정을 벗어난 모든 형태의 승인받은 현장학습으로 정의한다. 학교 건물을 관리 감독하는 모든 행정 관리 및 교직원들은 본 규정을 숙지하여 학교 견학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생산적이며 즐겁고 안전한 경험이 되도록 한다.

I. 목적

- A. 학교 견학은 학생들에게 관찰, 탐구, 발견과 직접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각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시간 중, 또는 전후에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 B. 모든 학교 견학은 교육적 목적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적절한 기념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교과과정과 학습 환경의 연장선으로 여겨져야 한다.
- C. 모든 학교 견학에서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 D. 본 규정은 뉴욕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 주요 감독 및 관리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교육청 후원 견학에 적용된다.
- E. 본 규정 및 각종 동의서 양식(<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frequently-used-documents>)은 학교 외부지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교과 학습 및/또는 체육 수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들에서 학교는 반드시 학부모들에게 적절하게 안내를 하고 적합한 관리 및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규정은 교환학생이나 홈스테이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수퍼인텐던트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적절한 동의서 양식이나 견학 관련 서류는 학교에 배정된 수퍼인텐던트 및 시니어 현장 자문의 자문을 얻어 작성되어야 한다.
- F. 학부모회/학부모-교사회 또는 기타 학교와 관련 있는 외부 단체가 후원하는 견학 시, 학교는 반드시 수퍼인텐던트 팀 및/또는 시니어 현장 자문과 상의하여 이 견학이 교육청 견학인지(본 규정 요건 적용) 아니면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견학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 G. 해당 견학이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 결정되었다면,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이 견학이 교육청에서 후원하는 견학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고 모든 견학 관련 문서들이 반드시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 H. 어떤 견학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외부 단체에서 지급될 때, 여행 경비와 관련된 이해 상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감 규정 C-110을 참조한다. 이 문제에 관련된 질문들은 교육청의 윤리 담당관(Ethics Officer)에게 문의한다.

II. 계획 및 준비

A. 계획하기

1. 모든 학교 견학은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내 특별 프로그램(예, 클럽)에 의해 조직된 모든 여행은 학교 견학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본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외 여행 역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수퍼인텐던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퍼인텐던트는 여행 승인 이전에 여행 대상 국가/지역에 여행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참고 www.cdc.gov; www.travel.state.gov.) 만일 해당 지역에 여행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진 경우, 수퍼인텐던트는 반드시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대리인의 자문을 얻어 여행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교육감 규정 A-710(<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710-korean>)에 의거하여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및/또는 섹션 504 계획 학생들이 장애가 없는 또래들과 동등하게 견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타당한 편의(들)을 제공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4. 상세 여정이 첨부된 견학 계획서(Trip Plan)는 반드시 “견학 계획서” 양식(<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frequently-used-documents>)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학교 파일에 보관해야 한다. 견학 계획서에는 책임자, 참여 학생과 학급, 의료적 필요사항, 숙박, 활동, 방문 장소, 참가하는 모든 성인의 이름, 출발 및 귀가에 관한 세부사항, 교통편 및 운송업체, 보험적용 범위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5. 학교장/대리인은 해외 여행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해당 국가 여행과 미국의 재입국에 필요한 모든 서류(예, 여권 등)를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 특히 미국 여권이 아닌 타국 여권을 소지한 학생의 경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6. 학교장/대리인은 해외 여행에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직원 중 최소 1명은 국제 통화 서비스가 가능한 전화를 소지하도록 해야 한다.
7. IEP 및/또는 섹션 504 계획에 교통편이 추천된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교통편과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8. 의료적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계획 및 의료 응급상황과 우발 사고 대비 계획 역시 견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행을 인솔하는 성인 감독관은 비상 구급약, 해당 지역 응급 서비스 전화번호 및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학생들의 집 전화번호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9. 직원들은 여행을 계획할 때 숙박시설이나 교통편 등에 대해 정부나 학교에서 매긴 평가 등급이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또한 면세 대상으로 처리해 줄 것을 항상 요구해야 하며, 공급처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이러한 면세 증명 서류를 항상 첨부해야 한다.
10. 학교장/대리인은 수영 활동이 포함된 여행을 승인하기에 앞서 반드시 학생들의 수영 활동이 계획된 모든 시간에 인명구조원이 현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명 구조원이 현장에 부재할 경우에는 어떤 수영 활동도 허락될 수 없다.
11.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한 성격의 모든 여행 시, 학교에서는 반드시 기금마련을 통해 여행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

B. 비용

입장료와 숙박비 등의 경비는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된다. 또한 경비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을 제외시켜서는 안된다. 학교에서는 해당될 경우,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견학이나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C. 학부모 통지서, 동의서 양식 및 각종 서류

1. 학부모들에게는 사전에 여행 계획을 고지하고 모든 학교 견학이나 여행에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각 학교는 반드시 교육청의 자주 사용하는 서류(<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frequently-used-documents>) 웹페이지에서 교육감 규정 "A-670" 하의 해당되는 동의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양식 내용을 조금이라도 변경시키거나 고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률 자문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부모에게 발송하는 모든 통지문은 교육감 규정 A-663(번역본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663-korean>)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 18 세 이하 학생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부모나 보호자, 또는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 관계에 있는 성인이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견학에 참가할 수 없다(<https://www.schools.nyc.gov/about-u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frequently-used-documents> 참고). 18 세 이상 학생이나 독립한 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스스로 참가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다.
4. 모든 동의서에는 해당 견학이나 여행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노출될 지도 모를 잠재된 위험(예, 수영, 승마, 아이스 스케이팅, 피트니스 기구 사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에 학부모의 참가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특별히

따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학생이 견학이나 여행시 특정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의료진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것 역시 견학이나 여행 이전에 받아야 한다.

D. 감독

1. 학교장은 견학이나 여행에 참가하는 자격증 있는 교사나 교감, 또는 기타 감독관들을 견학 총 책임자로 지명해야 한다. 약물중독 프로그램과 관련된 견학의 경우 평소 학생들을 담당하는 약물 남용 예방 및 중재 스페셜리스트가 견학 총 책임자로 지명될 수 있다.
2. 학교 견학 및 여행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3. 모든 견학이나 여행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직원은 반드시 해당 견학이나 여행을 주도하는 학교 교직원이어야 한다. 학교장 재량으로 타 학교 교직원의 학생 인솔을 승인할 수 있다.
4. 견학이나 여행에 위험요소가 잠재된 활동(예, 수영, 승마, 스키, 아이스 스케이팅, 피트니스 기구 사용 등)이 포함된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적절한 성인 감독관이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5. 어떤 활동에 필요한 보호 장비(예, 승마 시 헬멧)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6. 교직원 대 학생 비율

a) 뉴욕시 내에서 이뤄지는 정기적인 일일 견학:

초등 및 중학생의 경우, 학생 삼십(30)명당 최소 한(1) 명의 교직원 및 추가로 두(2) 명의 성인 인솔자가 요구된다. 고등학생 경우, 학생 삼십(30)명당 최소 한(1) 명의 교직원 및 추가 한(1) 명의 성인 인솔자가 요구된다. 이 때 필수 인솔자는 반드시 교사 또는 슈퍼바이저 이어야 한다. 기타 인솔하는 성인(들)은 반드시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교원(예, 교사, 학생주임, 가이던스 카운슬러, 사회 복지사 등), 또는 보조 교사나 학교 보조원 중 한 명 이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참가 학생이 추가로 열(10)명 증가할 때마다 성인 인솔자 1 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참가 학생이 추가로 열 다섯(15)명 증가할 때마다 성인 인솔자 1 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b) 뉴욕시 외 지역으로 가는 일일 견학 또는 1 박 이상의 여행:

초, 중, 고등학생 경우, 학생 삼십(30)명당 최소 두(2) 명의 교직원 및 추가 한(1) 명의 성인 인솔자가 요구된다. 상기 설명한 두 명의 교직원 중 최소 한 명은 교사 또는 슈퍼바이저 이어야 한다. 다른 교직원은 교원(예, 교사, 학생주임, 가이던스 카운슬러, 사회 복지사 등)이나 보조 교사, 또는 학교 보조원 중 한 명 이어야 한다. 기타 인솔하는 (1) 명의 성인은 반드시 학부모 자원 봉사자나 교원(예,

교사, 학생주임, 가이던스 카운슬러, 사회 복지사 등), 또는 보조 교사나 학교 보조원 중 한 명 이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참가 학생이 추가로 열(10)명 증가할 때마다 성인 인솔자 1 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참가 학생이 추가로 열 다섯(15)명 증가할 때마다 성인 인솔자 1 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c) 해외 견학

학생 십오(15) 명 당 최소 두(2) 명의 교직원 및 추가 한(1) 명의 성인 인솔자가 요구된다. 상기 설명한 두 명의 교직원 중 최소 한 명은 교사 또는 슈퍼바이저 이어야 한다. 다른 교직원은 교원(예, 교사, 학생주임, 가이던스 카운슬러, 사회 복지사 등)이나 보조 교사, 또는 학교 보조원 중 한 명 이어야 한다. 기타 인솔하는 한(1) 명의 성인은 반드시 학부모 자원 봉사자나 교원(예, 교사, 학생주임, 가이던스 카운슬러, 사회 복지사 등), 또는 보조 교사나 학교 보조원 중 한 명 이어야 한다. 참가 학생이 추가로 열(10)명 증가할 때마다 성인 인솔자 1 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d) IEP 가 있는 학생

IEP 가 있는 학생이 참가하는 견학이나 여행의 경우, 학생 대 인솔 교직원의 비율은 이들의 해당 학급에서 평소 요구하는 교사 대 학생 비율과 최소한 동등해야 한다.

7. 수영 및 기타 수상 활동 추가 요건

a) 수영 및 기타 수상 활동 시 교직원 대 학생 비율

학생들이 수영이나 기타 수상 활동(예, 조정, 카약 등)에 참가할 경우, 다음의 학생 대 성인 인솔자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1) 초등 및 중학생의 경우, 학생 삼십(30)명당 최소 두(2) 명의 교직원 및 추가로 두(2) 명의 성인 인솔자 필요.
- (2)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 삼십(30)명당 최소 두(2) 명의 교직원 및 추가로 두(2) 명의 성인 인솔자가 요구된다.
- (3) 상기 설명한 교직원(들) 중 최소 한(1) 명은 교사 또는 슈퍼바이저 이어야 한다. 다른 교직원은 교원(예, 교사, 학생주임, 가이던스 카운슬러, 사회 복지사 등)이나 보조 교사, 또는 학교 보조원 중 한 명 이어야 한다.
- (4) 기타 인솔하는 두(2) 명의 성인은 반드시 학부모 자원 봉사자나 교원(예, 교사, 학생주임, 가이던스 카운슬러, 사회 복지사 등), 또는 보조 교사나 학교 보조원 중 한 명 이어야 한다.

- (5) 초등학교의 경우 참가 학생이 열(10)명 증가할 때마다 성인 인솔자 두(2)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참가 학생이 추가로 열 다섯(15)명 증가할 때마다 성인 인솔자 2 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 b) 학생들은 반드시 현장에 인명 구조원이 근무할 때에만 수영이 허락되어야 한다. 인명 구조원은 학생들이 수영하는 모든 시간 동안 현장을 지켜야 한다.
- c) 카약이나 튜빙, 또는 조정 등과 같이 수영 이외의 수상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항시 구명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 d) 해외 견학의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생들이 참여할 활동과 관련하여 적절한 성인의 감독이 이뤄지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8. 정해진 견학 종료 시간보다 학생이 일찍 귀가해야 할 경우, 학생의 부모가 데리러 오지 못하면 반드시 교직원이 귀가에 동행해야 한다.
9. 동의서에 특별히 따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견학의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을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해산시킬 수 없다. 귀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할 총책임은 반드시 학교장/대리인이 진다. 정상참작 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상호 동의 된 장소에서 해산될 경우,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연락하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각 학생의 학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해당되는 교직원이 학생(들)과 함께 해산 장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 만일 학부모가 학생을 데리러 나타나지 않고, 여러 차례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을 경우 학교장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10. 견학 시 학부모가 동반한 학생의 형제자매로서 견학하는 학급(들) 소속이 아닌 사람은 견학에 참여할 수 없다.
- E. 비상 상황
1. 학생 실종 시
- a) 한(1)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이 견학 장소에서 사라졌을 경우,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사법 당국에 즉시 연락을 취하고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수색 후에도 학생(들)을 찾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 경찰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현장을 책임진 교직원은 반드시 자신의 슈퍼바이저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 b) 없어진 학생을 찾을 때까지 교직원 한 명이 반드시 견학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 견학에 참가한 다른 학생들과 어른들이 그 장소를 떠나도 되는지는 현장을 책임지는 교직원이 결정한다. 이러한 모든 결정은 교직원의 슈퍼바이저와 상의한 뒤 내린다. 실종된 학생의 학부모에게 수색 상황을 수시로 알리도록 한다.

2. 질병/부상 시

- a) 학생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 즉시 해당 보건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해당 보건 담당자는 학생의 부상이나 질병의 심각한 정도를 판단하고 병원으로 후송이 필요할 경우 성인 한 명이 반드시 학생을 동반한다.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자녀의 행방(예, 병원)과 질병 또는 부상 내용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 b) 현장을 담당하는 교직원은 다른 학생들과 성인들이 견학 현장을 떠나야 할지 결정하며,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학생이 현장을 떠날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교직원 한 명을 함께 남겨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결정은 교직원의 슈퍼바이저와 상의한 뒤 내린다. 학부모가 견학 장소로 즉시 올 수 없을 경우, 자녀의 상태에 관해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III. 교통

A. 학교는 다음과 같은 교통편을 사용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수단(예, 지하철, 버스)
2. 등록된 상용 항공기
3. 도시간 버스 또는 교통시스템(예, 앰트랙, 그레이하운드 등) 및/또는
4.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스쿨버스를 포함한 허가 받은 사설 버스:
 - a) 모든 학생 운송용 차량은 반드시 학생 운송에 관한 모든 연방법, 주법, 시 법 및 교육청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차량, 운전 기사, 보험 및 회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법규들을 포함하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며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목록은 반드시 학생 통학 담당실(Office of Pupil Transportation)에 연락하여 취득한다.
 - b) 학생 통학 담당실에 견학용 버스를 요청하려면, 각 학교는 학년도 시작 전에 모든 학교와 공유된 견학용 버스 확보 절차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 c) 견학 시 무허가 차량이나 개인 차량으로 학생들을 운송해서는 안된다.

B.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IEP 및/또는 섹션 504 계획에 교통편이 추천된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교통편과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IV. 보험 및 배상

- A. 학생들이 고위험 활동(예, 수영, 승마, 스키, 아이스 스케이팅, 피트니스 기구 사용 등)에 참가하는 견학이나 여행의 경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방문하게 될 시설에서 건당 \$2,000,000 이상의 종합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하며, 해당 시설이 4-21 세 학생 수용에 적합한 당국의 모든 보건, 화재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견학을 계속 진행시켜야 할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해외 여행 시에는 모든 참가자를 커버하는 응급 단체 의료보험을 구매해야 한다.

- B. 해당 시설에서 보험가입 증빙을 요구하거나 교육청 직원, 학생 또는 견학 초청자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해당 학교에 배정된 시니어 필드 카운슬러에게 연락을 취하고 선임 현장 자문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어떤 문서에도 서명해서는 안 된다.
- C. 보험 및 배상에 관한 모든 질문은 해당 시니어 필드 카운슬러에게 한다.

V. 책임

뉴욕주 법에 의거하여 교육청 직원과 승인된 학교 자원봉사자들은 이들이 직무 및 공무 수행 중 행한 행동이나 실수가 발생 시점 기준으로 교육청 규정이나 법규를 어긴 것이 아닌 이상, 이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제기와 관련하여 법률 대리 서비스 및 보상책임을 면제 받을 자격이 있다. 교육청 직원/자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교육청 법률 자문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에 212-374-6888 번으로 연락하여 New York City Office of the Corporation Counsel 의 법률 대리 서비스를 요청한다.

VI. 예외 조항

교육감 또는 대리인이 뉴욕시 학교 학군 이익에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 규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예외를 둘 수도 있다.

VII. 문의처

본 규정에 관련 문의: 해당되는 수퍼인텐던트 팀을 다음에서 찾아 문의:
<https://www.schools.nyc.gov/about-us/leadership/district-leadership>.